

■ 정부청사관리규정 [별표] <개정 2021. 1. 5.>

청사의 수급 및 관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(제3조제1항, 제9조 및 제11조 관련)

1. 국방 또는 군사시설
2. 형 집행시설
3. 교육시설
4. 의료시설
5. 재외공관용 청사
6. 시험·연구시설
7. 관람집회 또는 전시시설
8. 그 밖에 시설 사용의 주목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이 아닌 시설